

제24조(채비지의 신탁)①시장은 채비지를 신탁하고자 하는 때에는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의 관련규정을 준용한다.

제4장 보 칙

제25조(권한의 위임)①시장은 채비지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채비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에게 위임한다.

1. 채비지의 관리대장비치 및 기록유지, 무단 점유예방, 지장물철거 등 개별 채비지의 관리
2. 제4조제1항제4호 내지 제6호(학교용지 제외)의 규정에 해당하는 채비지의 매각
3. 채비지의 대부 및 대부료·변상금의 부과 징수. 다만 제15조제3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.

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에게 관리사무를 위임한 채비지의 대부료·변상금 또는 매각대금의 30%에 해당하는 금액은 당해 자치구에 귀속된다.

제26조(준용)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채비지의 매각, 대부료 또는 변상금 부과·징수 절차 등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 및 지방재정법시행령의 해당 규정을 준용한다.

제27조(규칙)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종전의 계약 등에 관한 경과조치)①이 조례에서 폐지되는 서울특별시채비지대부료 등부과·징수조례에 의하여 이루어진 대부계약 또는 변상금의 처분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.

②이 조례 시행당시 서울특별시채비지관리및 처분규칙에 의하여 매각계약이 이루어진 채비지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채비지관리및 처분규칙에 의한다. 다만, 서울특별시채비지관리및 처분규칙의 규정이 이 조례의 규정에 비하여 불리한 경우에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다.

제3조 (다른 조례의 폐지)서울시채비지대부료 등부과·징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.

2001년도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 
심 사 보 고 서

의안 번호	939
----------	-----

2001년 9월 일  
행정자치위원회

1. 심사경과
  - 가. 제안자 및 제안일자 : 2001년 8월 20일, 서울특별시장 제출
  - 나. 회부일자 : 2001년 8월 22일
  - 다. 상정일자 : 제128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(2001년 9월 4일 상정) 제128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(2001년 9월 12일 의결)
2. 제안설명의 요지
 

(제안설명자 : 행정관리국장 김건진)

  - 가. 제안이유
    - 정신지체장애자 재활을 위한 공간마련을 목적으로 노원구 공릉동 656-3 대지 998㎡를 사회복지법인 다운회에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고,
    - 주택공급을 위하여 중랑구 산본동 및 양천구 신월동, 신정동 일대 대지 1,854㎡를 재건축조합과 우정건설에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고자 하는 것임.
  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 

(전문위원 : 김태호)

    - 가. 수의계약의 법적근거
      - 장애인복지법 제43조
 

“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 또는 장애인복지단체의 장애인복지사업 관련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필요한 자에게 국·공유지 및 시설 등을 우선 매각하거나 임대 또는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.
      - 주택건설촉진법 제24조
 

“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과 주택조합이 건설하는 주택을 위하여 국·공유지를 매수나 임대를 원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타에 우선하여 그에게 매각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. 이와 같은 근거에 의거 수의계약에는 문제가 없음.
    - 나. 사후관리

장애자 및 무주택자 서민을 위하여 시유지를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는 만큼 매수 또는 임차인으로부터 2년 내에 본래의 목적대로 건설하지 아니할 경우 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근거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바, 매수자가 본래의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과정에 관심을 계속 가져야 할 것임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5. 토론요지 : 없음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7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2001년도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

전문복지관이 없어 정신지체 장애로서 재활 가능성이 가장 큰 장애인만 적절한 재활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다운중후군 환자 및 그 가족의 경제적 부담 및 건강한 가정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장애인복지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복지법인인 다운회에 수의매각하고, 주택건설촉진법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주택건설사업 구역 내 위치한 시유잡종재산을 주택건설사업승인을 받은 재건축조합 및 민간건설업체에 수의매각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2001년도 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을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결한다.

관리계획변경계획 계상재산(목록 : 별첨)

○ 매각 4건 : 7필지 2,852.8㎡(862.9평)

**2001년도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총괄**

회계명-일반회계

(단위: ₩, 천원)

구분	총합계			기점관리계획			규획변경내역				
	건수	면적	금액	건수	면적	금액	건수	면적	금액		
여목	계	토지	3	2,250.8	3,493,954	3	2,250.8	3,493,954			
		건물	6	9,312.9	9,832,334	6	9,312.9	9,832,334			
		기타									
	매입	토지	3	2,250.8	3,493,954	3	2,250.8	3,493,954			
		건물		339.9	33,908		339.9	33,908			
		기타									
	교환	토지									
		건물									
		기타									
	건물신축	토지	6	8,979.0	9,798,426	6	8,979.0	9,798,426			
건물											
기타											
치분	계	토지	13	45,174.0	30,898,788	9	42,321.2	27,342,375	4	2,852.8	3,556,413
		건물		3,409.4	384,726		3,409.4	384,726			
		기타									
	매각	토지	13	45,174.0	30,898,788	9	42,321.2	27,342,375	4	2,852.8	3,556,413
		건물		3,409.4	384,726		3,409.4	384,726			
		기타									
	양여	토지									
		건물									
		기타									
	교환치분	토지									
건물											
기타											